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06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11. 13.
- 라. 회부일자 : 2024. 11. 13.

## 2.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만 나이 규정과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7조)
- 나. 만 나이 규정 정비(안 제18조)
- 다. 불필요한 등록규제 정비(안 제19조)
  -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 폐지
  - 과도한 규제 완화

## 라. 정비대상 목록

연번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1	유형 ①	국어 진흥 조례	제6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통담당관
2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제9조 제13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 → 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편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민원처리기준표	소통담당관
3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행정지원과
4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행정과
5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품질인증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원양산 포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인증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수산물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지원과
6		공인 조례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민원여권과
7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2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기획예산과
8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기획예산과
9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경제과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6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 무 과
11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재 무 과
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장 조례	제7조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 무 과
13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세 무 1 과

연번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14	유형 ①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과
1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환 경 과
1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 제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민원사무처리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환 경 과
17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11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건정책과
18	유형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	· 만 65세 이상 → 65세 이상	보건정책과
19	유형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 상위법과 중복된 규제 폐지 (제18조제1호 삭제) · 상위법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 폐지 (제18조제2호 삭제)	지역경제과
			제21조	· 과도한 규제 완화: 신청 자격 규제 폐지 (제21조 삭제)	

#### 4.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 5. 검토의견

-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해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특히 본 개정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제2호 규정의 삭제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다행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7호, 2022. 4. 20., 일부개정]

### 제22조(자치법규 정비)

-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 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